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2019. 9. 23.)

조례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9.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9. 6.
-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9.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를 정함(안 3조 ~ 제4조)
-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상시고용인력센터 지원 사업 확대 신설(안 제6조)
 - 숙식비, 안전용품 제공
 -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 법령 재기재 사항, 사문화 규정, 용어 등 정비(조례 전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 안 제5조는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사항
 - 안 제6조는 상시고용인력센터 지원 사업 확대 신설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
 - 아울러 조례 전반에 대한 법령 재기재 사항, 사문화 규정,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본 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 일용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에 관한 사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함.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란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2.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거창군 옹양면 화평길 6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주: 농가,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등
2. 농업근로자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을 마친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9.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9. 6.
-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9.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가. 제안이유

- 기존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7. 1. 28.)으로 삭제되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이 기관위임사무로 됨에 따라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준곤]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관한 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
 - 아울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역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9. 3, 심재수의원외 10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 9. 6.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9.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심재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잘 반영하였으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 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단, 신청일로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9.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19. 9. 6.
-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9. 9.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덕기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농작물등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경작지에 발생한 농작물등 피해는 보상 제외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 변경함(안 제4조)
 - 현행 : 부상 또는 사망 시 최대 50만원
 - 변경 :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 ▷ 상해 :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 ▷ 사망 :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상

- 그 밖에 법령 내용을 확인·재기재한 내용 삭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춘곤]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제2항 농작물등 피해보상 제외대상
 -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경작지에 발생한 농작물등 피해는 보상 제외
 - 안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 변경
 - ▷ 현행 : 부상 또는 사망 시 최대 50만원
 - ▷ 변경 :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 상해 :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 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 사망 :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상
 - ▷ 그 밖에 법령 내용을 확인·재기재한 내용은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환경부고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농작물 피해보상액 500만원, 유가족 사망위로금 1,000만원)에서 거창군의 특성에 적합한 사항과 세부 사항 등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 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해보상액 =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 × 피해면적 × 피해율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보상 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70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학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